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9342
보존기간	86
결재일자	2015.10.13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	
·협	공사감독2처장			
	공사감독3처장			

공사 감독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 결과보고

2015.10.



공사감독 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 결과 보고

○ 공사 감독 위탁업무의 협약기간이 만료('15.10)됨에 따라, 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사감독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업무의 위탁)
 -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**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**, 법인·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(제12조)

□ 추진 실적

- '14.10. 4 市·공사감독 위탁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 (도로시설과)
 - 일반공사와 상수도공사 협약서 통합 운영('14년 감사 조치사항)
 - 일반공사(3년:'12.10.5.~'15.10.4), 상수도공사(2년:'14.7.1~'16.6.30)
- 2.26 市·공단 합동실무협의체 구성 (위탁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 실시)
 - 2015년 공사감독 위탁물량, 위탁방법 결정 및 위·수탁 협약서 개정방안 검토
- 3.25 「위·수탁협약서 통합 개정 및 업무지침서 제정(안)」 관련 공사감독처 정책회의 실시
- 3.31 「위·수탁협약서 및 업무지침서(안)」도로시설과 제출
- 6.22 「건설공사 위탁감독자 업무지침서(안)」 발주청 의견조회 (도로시설과)
- 7.17 「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」시행
- 7.28 「감독위탁공사관리」 재계약 적격자 심의
- 8.25 「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서 통합(안)」공단・상수도사업본부 의견조회 (도로시설과)
- 9.8 「공사감독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」도시안전건설위 보고
- 10. 2 「공사감독업무 위수탁협약」심사 (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)
- 10. 7 「공사감독업무 위수탁협약」체결 요청 (도로시설과)

□ 공사 감독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

- 위탁대상 : 공사 감독업무
 -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, 서울시와 자치구 시비지원 건설공사(200억원 미만)
- 위탁기간 : '15.10.5 ~'18.10.4(6차 협약 : 3년)
- 시 행 일 : '15.10.5부터

● 협약서 구성

- (1) 목적 (2) 정의 (3) 위·수탁 대상 (4) 위·수탁 사무 (5) 위·수탁 기간
- (6) 사업계획 (7) 사업의 수행 (8) 업무의 협의 (9) 근로약정 이행 등
- (10) 관계법령 등의 준수 (11) 예산편성 및 회계심사 (12) 사업비 지급 및 집행 (13) 사업비 정산 및 반납 (14) 지도·점검 (15) 종합성과 평가
- (16) 협약이행의 보증 (17) 지위 이전, 제3자 위탁금지 (18) 민·형사상 책임 (19) 협약의 해제 및 해지 (20) 비밀유지 의무 (21) 협약의 해지
- (22) 협약의 효력 등 (23) 협약서의 보관 등 (부칙)

● 협약서 변경 내용

- "갑""을" 용어정정(시장지시사항 이행)
 - 서울시 : "갑"→"시"/ 공단 : "을"→"공단"
- 공사감독업무 인용법령 변경
 - 감독위탁공사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→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
 - 감독업무 : 건설기술관리법 28조의4 →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
- 합동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위탁대상 공사 선정
 - "시"는 "발주청", "공단"과 협의하여 감독위탁공사를 정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통보
- 설계용역(자체설계) 준공전 공단감독 참여 명시
 - 계약 심사전 감독위탁 대상 공사의 통보 및 설계도서 검토요청 (단계별 업무한계포함)
- 일반공사와 상수도공사 협약서 통합에 따른 부칙 추가
 -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ㆍ수탁 협약서 2016.6.30.까지 유지
 - * 상수도 감독업무 위탁기간 : 2014.7.1.~2016.6.30

□ 향후 계획

- 협약서 공증 및 제출 (서울시) : 10.14限 * 위·수탁협약서 공증에 따른 비용 집행
- "감독 위탁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서" 추진기간 변경: '15.12월限
 - 개정 완료된 위·수탁 협약서와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서간의 통일성 확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필요.

따로붙임 공사 감독업무 위·수탁 협약서 1부. 끝.